힐링시티 해남건설로
군민행복시대 구현
The realization of happy Haenam with healing city through Haenam constructions

2016년 산이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2016. 10. 11. ~ 10. 14.(4일간)
- **감사대상기간:** 2014. 11. 1. ~ 2016. 10월 현재
- **감 사 반:** 감사팀장외 5명
- **지적사항:** 27건
  - ○ 처분종류: 27건(시정11, 주의16)
  - ○ 재정상: 1,807,380원(회수991,880 / 추징815,500)
  - ○ 신분상: 6명(훈계1, 주의5)

해 남 군
〔감 사 담 당 관〕

2016년 산이면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

Ⅰ 감사 개요

1. 기본방침

가.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6대 중점과제 집중 감사

나.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감찰)활동 전개

다. 업무추진에 따른 제약요건 등을 개선하는 사전 예방에 중점

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2. 감사 중점사항

가. 군정시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의 감사 실시

○ 업무를 틀을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검토

나.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공직자 기본자세 6대 과제 지속 점검하여 행정의 기본 체질 강화

○ 행정재산, 민간위탁사무 등 취약업무 주기적 점검체계 확립

○ 취약업무 지속 발굴, 행정의 자기 통제 시스템 확립

○ 언론보도, 군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 점검

○ 계약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여부 중점 감사

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대상을 일한 내용보다는 부작위 행위로 전환

○ 적극적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감사결과 문제점,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

○ 공금횡령, 토착비리, 고의적 봐주기성 업무처리 반드시 문책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고의 민원사항 처리 지연행위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

3. 감사 총평

○ 2015년 재활용품 수집실적 최우수,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장려상 수상 등 군정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추진에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감사에 대비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력한 흔적이 보임.

○ 하지만 업무량이 많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담당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연찬이 부족하여 잘못된 행정을 답습하는 사례가 여러 분야에서 보여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감사를 계기로 문서 보완 및 사무실 정리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통해 업무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임.

○ 감사 반복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모습은 보이나 완벽하지 않았으며, 각종 대장 및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업무추진과정에서 팀간 업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신규직원의 읍면 과다 배치, 중간에서 지도해 줄 직원 부족, 업무숙지 미숙 등으로 읍면 행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면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업무숙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업무담당자는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면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자세가 필요함.

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분야	건 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11	16	1,807,380	991,880	815,500	0	
1	총무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및 작성 부적정		○					
2	"	보존문서 관리 소홀	○						
3	"	보안업무 처리 및 관리 소홀	○						
4	"	업무 인계 미실시 및 업무대행자 미지정		○					
5	보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업무 추진 소홀	○						
6	방역	2016년도 방역사업 추진계획등 업무추진 부적정	○						
7	지역	민간보조사업(경로당 개·보수) 추진 소홀		○					
8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소홀		○					
9	건설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10	세출	세출예산 집행 소홀		○					
11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						
12	"	지출증빙서류 구비 소홀		○					
13	지방세	취득세 부과요구 소홀	○				793,900		
14	"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				21,600		
15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						
16	복지	국민기초수급자 전입에 따른 상담업무 소홀		○					
17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	○						

연번	분야	건 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18	민원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					
19	〃	학교민원 업무처리비 관리 소홀		○					
20	농정	'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점검 소홀	○			48,880			
21	〃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등 관리 소홀		○					
22	〃	'16년 사업추진시 계약업무 지도 소홀		○					
23	〃	'16년 가축방역 예방백신 공급 소홀		○					
24	건설	건설공사 기술사 배치 승인 부적정		○					
25	〃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시 사회보험료 미계상		○					
26	〃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 확인 소홀		○					
27	〃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			943,000			

2. 분야별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 분야

1)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및 작성 부적정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하면 6급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는 퇴직·휴직·전보되는 경우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업무의 인계)에 의하면 전보, 전출, 휴직 등의 명령을 받은 6급이하의 공무원(직위자 제외)도 서면에 의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4.11.1.이후 인사발령과 업무변동에 의한 업무변경자 22명의 사무인계인수 및 인계를 부적정(미작성, 내용누락, 다른 서식으로 작성, 입회순서 부적정, 입회자·작성일자 누락, 상급기관 미보고 등)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인계인수서와 업무인계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내실 있는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시기 바람.

2) 보존문서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3조(편철 및 관리),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26조(보존기간), 제43조(평가 및 폐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15조(기록물 관리책임자),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절차’ 및 ‘2016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해남군 행정지원과-1867호(15. 3. 6.) 및 행정지원과-6002호(15. 5. 18.), 행정지원과-10038호(16. 5. 11.)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관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기록물을 편철·등록하고, 문서고에 이관하며, 폐기목록을 작성하는 등 매년 정하여진 시기에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철을 생산년도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 현황을 관리

하는 등 보존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문서고 관리 미흡 및 미분류(폐기문서 및 미분류문서 혼합 관리)
- 보존문서를 보존기간별, 생산년도별로 일부만 관리
- 보존문서 보존기간별, 생산년도별 기록대장 미작성 등
- 보존상자의 작성 부적정(보존기한 등 미기재) 및 폐기목록 미작성 등

나) 조치의견

- 보존문서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편철·등록하고, 문서고에 이관·관리하며, 폐기목록을 작성하는 등 보존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3) 보안업무 처리 및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의 취급), 제10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제24조(비밀의 열람)·제2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제19조(재분류 검토)·제35조(보관책임자)·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제45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68조(보안담당관의 임무)·제69조(보안교육)·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보안책임자)·제39조(지출 및 파기계획)·제49조(보안교육)·제51조(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

- 산이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만 인계인수하고, 3급 비밀문서 2건에 대해서 비밀열람기록전 미정리 등 비밀문서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 업무 인계 미실시 및 업무대행자 미지정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업무의 인계) 및 행정지원과-16138호(16. 8. 5.)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대행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장기교육 등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아울러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하였음.

나) 조치의견

- 공무원이 출장·휴가·병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5) 신생아 양육비 지원업무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6조(지원절차), 제9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민원의 접수)의 규정에 의거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보고 미이행, 민원 미접수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대장 관리 및 업무보고를 준수하시기 바람.

6) 2016년도 방역사업 추진계획 등 업무추진 부적정

가) 지적사항

- 해남군 보건소-5846호(2016.2.11)의 “2016년도 방역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매년 방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유충구제 방역(동절기, 하절기)과 성충구제 방역(해빙기, 취약지, 특별방역- 영산강 Ⅲ-1·2, 기업도시 등) 그리고 공동방역단을 운영하여 분무소독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방역단의 적정운영실태 및 마을방역소독 현지 확인, 주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점검을 통해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동방역단의 위탁방역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방역 실시확인서(별지2), 위탁방역 실시기록부(별지3), 방역약품 수불대장(별지4), 방역일지(별지5), 공동방역단 운영비 지급내역부(별지6), 공동방역단 위탁계약서 등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공동방역단 위탁계약서 작성 소홀, 각종 대장 미비치 및 미정리 등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연도별 방역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친환경적 유충구제, 성충구제, 공동방역단의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대장 및 확인서 작성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나. 공사 분야

1) 민간자본보조(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소홀

가) 지적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민간자본보조) 추진 지침에 의하면 사업건의(현황사진, 사업계획서) →예산확보 및 사업확정→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설계서[견적서]) →설계서의 건축면적, 구조 등에 따라 보조금액 확정→계약서 작성 등→ 사업완료(현황사진)→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 산이면 - 1045호(2015. 2. 25.), 산이면 - 3694호(2015. 4. 15.), 산이면 - 11679호(2015. 10. 5.), 산이면 - 12100호(2015. 10. 13.)와 관련 임.

- 산이면에서는 “산이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5건을 추진하면서 사업량(규모) 등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에 의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당 개보수사업(민간자본보조)을 추진하는데 소홀하였음.

나) 조치의견

- 경로당개보수사업(민간자본보조) 추진 지침에 의하여 사업 추진시 사업량(규모), 설계서 등 구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수도법 제47조(마을상수도) 및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해남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 제7조(점검)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운영, 관리상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및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매 분기(연 4회) 실시하여야할 정기점검을 '15년 1/4, 3/4분기만 실시하고 2/4, 4/4분기(2회)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시기 바람.

3)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계약담당자)는 위 항에서 정하여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두고 기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하자검사 대상 247건중 2016년도 115개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 132개소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정에 의거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4)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승인 부적정

가) 지적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하되, 동일 지역에서 시행되는 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명의 기술자를 4개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 ㈜소속의 건설기술자 ☆☆☆를 "◇◇ 개거 설치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승인 하였는가 하면 2016년 6월 23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는 (주)○○토건 소속의 건설기술자 ☆☆☆을 "◇◇1 농로 포장공사" 외 4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또한 (주)○○건설 소속의 건설기술자 ☆☆☆을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 까지 "◇◇ 농로 포장공사" 외 3건의 건설공사 현장에 동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 하는 등 건설기술자 배치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였다.

나) 조치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람.

5)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시 사회보험료 미계상

가) 지적사항

-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계약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아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의 공사에는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 농로 포장공사" 외 2건의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면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았음

나) 조치의견

-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사회보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6) 건설폐기물 처리 사실 확인 소홀

가) 지적사항

-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5톤 이상의 폐기물은「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으로 선임된 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양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이면에서는「◇◇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1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및 반출 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건설공사 준공시에는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7)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제7절(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주)○○건설(대표자 ☆☆☆)과 계약 체결한 「◇◇ 농로 포장공사」는 콘크리트 코너부의 보호를 위하여 면대를 설치하여 모따기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105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다.

  그리고「◇◇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제2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 타설 현장까지 진입이 가능하여 레미콘 소운반이 불필요 하였고, 실제로도 소운반을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각각 374천원(제경비 포함)과 104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였다.

  또한 (주)○○토건(대표자 ☆☆☆)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 농로 포장공사」는 기존 토공면을 20cm 절취후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토공면에 대한 절취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준공대가를 지급하여 36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였다.

나) 조치의견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943천원은 회수하시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에 따라 공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다. 농정분야

1) ‘15년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점검 소홀

가) 지적사항

-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시 대상농지, 농업인, 무단점유 여부, 면적, 밭재배 면적, 휴경 면적, 전년도 자료와의 대사 정비, 신규 필지 등을 확인 조사 및 심사하고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직불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중 지목상이 필지 등에 대한 확인 조사 및 심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잘못 지급된 직불금 48,8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직불제 신청 신규 필지 현지조사 및 심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 ‘14년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등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4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 시설관리자의 임무 규정에 따르면 “양수장비 및 관정에 대하여는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동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관정의 전기 감전 사고 예방 및 채수량 확인, 관리대장 비치, 정비 등 관정 및 양수장비의 유지 및 안전 관리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산이면에서는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및 관정에 대한 관리대장에 정비 현황 등을 기록하고, 양수장비의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양수장비 및 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3) ‘16년 사업 추진시 계약업무 지도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동 제3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산이면에서는 창고문 개보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 면허(업태 및 종목)를 가진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이행하도록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나) 조치의견

- 사업추진 시 업태 및 종목확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4) ‘16년 가축방역 예방백신 공급 소홀

가) 지적사항

- 군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읍면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6개 축종 중 소에 대해서는 10두미만 영세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10두미만의 소 사육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수령하지 않는 약품이 있는 경우 사육규모 등을 감안 축산 농가에 고르게 공급하여 농장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했음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공급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수불대장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소독약품 수급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나) 조치의견

- 가축방역약품 수불대장에 기록 정리를 철저히 하시고, 약품은 배부계획 수립 후 농가에 배부하시기 바람.

라. 복지분야

1) 국민기초수급자 전입에 따른 상담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정기계획이외에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추가 등 가구 변동사항 발생시는 지원사항 확인조사를 위해 14일이내 방문하여 모니터 상담지를 활용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담 결과 및 실적을 행복e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4년 11월 ~ 2016년 8월까지 전입한 국민기초 수급자 11세대에 대해 14일 이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담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국민기초수급자 전입 시 14일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상담 결과 및 실적을 행복e음에 등록 관리하시기 바람.

2)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에서는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소양교육과 지역형(공익형, 복지형)은 활동능력을 개발하도록 유형별로 8시간 이상의 활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활동상황 점검, 참여자 고충 상담 등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여자 근무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및 관리하여야 하며 활동(근무) 관리대장은 매 활동시 반드시 참여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5~2016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5. 1월 ~ 2015. 7월 활동(근무)관리대장에는 참여자 자필로 서명하지 않는 등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활동관리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3)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가) 지적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에『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849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령인 미기재 1건, 대리발급자 서명 4건 등 총 5건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시기 바람.

4) 학교민원 업무처리비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 현금)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그 밖에 사무 관리에 필요한 잡종금 등”으로 구분·정리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된 학교민원 업무처리비의 집행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3항 및『어디서나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업무를 처리한 대학에 송금하여야 함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학교민원 118건을 처리하면서 업무처리비 118,000원을 민원인에게 현금 징수 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담당자가 수시로 대학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학교민원 업무처리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업무처리비를 현금징수 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 후 절차에 맞춰 다음달 20일까지 업무를 처리한 기관으로 송금하시기 바람.

마. 세출회계분야

1) 세출예산 집행 소홀

가) 지적사항

-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매입면제)제1항 별표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마.항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급량비 비목의 예산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5. 4. 30.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2,554,200원 등 6건 11,829,200원을 “구입과 지출결의서” 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 를 사용하였으며, 2015. 4. 30.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2,554,200원 등 3건 6,554,200원을 집행하면서 불필요한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1,000,000원 이상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공채매입면제대상’ 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채매입을 면제하시기 바람.

2)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Ⅴ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4.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의하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세입

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토록 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예금이자 8건 7,976원(카드결제계좌 4건 6,080원/세입세출외 현금 4건 1,896원), 해지이자 1건 4,412원, 건강보험환급 3건 114,780원, 장기요양 환급 2건 17,390원 총 14건 144,558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반납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14건 144,558원에 대해서는 군 세입부서로 세입조치 바람.

3) 지출증빙서류 구비 소홀

가)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5. 3. 10. 법인사업자인 ○○○○○○복지회로부터 행정봉투 320,000원 등 총 4건 800,000원을 집행하면서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부터 물품 구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징구하시기 바람.

바. 세무분야

1) 취득세 부과 요구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6년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신축한 ○○길◇◇◇-◇ ☆☆☆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3건과 부산 남구 ○○○길◇◇, ◇◇◇-◇◇◇◇ ☆☆☆ 소유 주택 1건을 조사 누락하여 793,900원의 취득세를 부과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취득세 부과요구 누락분 4건 793,900원에 대해서 즉시 부과요구 하시고, 지방세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가) 지적사항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1항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산이면에서는 2016년 광주시 서구 ◇◇로에 주소를 둔 ☆☆☆에게 도로점용을 2건 허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21,6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누락분 2건 21,600원을 즉시 부과 징수하시기 바람.

3)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가) 지적사항

-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계획 통보(세무회계과-12626/2016.3.30.) 공문에 의하면 읍면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이용하여 실제의 위치를 찾아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재산 등을 발굴 보고토록하고 하였으나,

- 산이면에서는 ○○리 ◇◇◇◇-◇(131㎡/전)등 2필지에 대해 산이면 ○○리 ☆☆☆ 등 2인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조치의견

- 무단점유하고 있는 ○○리◇◇◇◇-◇등 2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